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10월 14일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4. 11.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여러 상품명 및 광고 등에 무분별한 마약류 용어 사용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경우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에 긍정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저연령층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또한, 상품의 이름에 마약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영등포구 내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나. 실태조사(안 제6조)

다. 사업(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편, 상품명에 “마약○○”(예시: 마약베개, 마약잠옷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약”이란 용어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적용하여 “마약류”를 정의함.
- 안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실태조사)는 개선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사업)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
- 안 제8조(위탁)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최근 '24년1월2일 일부개정으로 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예방을 근절하기 위하여 사회 도처에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따라서, 우리 구(區)에서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개선계획 ▲실태조사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와 같이한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아울러,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자

방자치단체는 마약류 중독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제정안은 “상품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계도활동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마약류 사용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6
----------	-----

발의연월일: 2024. 10. .

발의자: 이규선, 유승용, 양송이,
차인영, 신흥식, 김지연,
박현우, 이순우, 임헌호
의원(9인)

1. 제안이유

여러 상품명 및 광고 등에 무분별한 마약류 용어 사용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경우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인지해 마약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저연령층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으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상품의 이름에 마약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영등포구 내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나. 실태조사(안 제6조)

다. 사업(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거나 상품명 및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

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